

행정기관명

수신자

(경유)

제 목 **공매통지**

아래와 같이 공매할 것임을 통지합니다(근거: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75조).

채납자	성명 (상 호)	생년월일 (사업자등록번호)		
	주소 (사업장)			
공매재산의 표시				
공매공고일자		년 월 일		
공매 장소		공매 방법	일반경쟁입찰(기일입찰, 기간입찰)·경매	
배분요구의 종기일자				
회차	입찰일시(기간)		매각결정 기일	매각예정가격
	입찰기간(입찰일)	개찰일자		
수의계약	제1회 공매 후 1년 간 5회 이상 공매해도 매각되지 않는 경우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67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.			
채권신고 최고 및 배분요구 안내	1. 공매공고의 등기(등록) 전까지 등기되지 않은 채권자 및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전세권자는 배분요구 종기까지 배분요구를 해야만 합니다(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76조제1항 및 제2항).			
	2. 배분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해야 할 부담이 바뀌는 때에는 배분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합니다(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76조제3항).			
	3. 공매공고의 등기(등록) 전까지 등기(등록)된 채권자가 배분요구의 종기까지 채권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공매집행 기록에 따라 채권액을 계산하며, 채권액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(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76조제6항).			
압류에 관계된 채납액 (단위: 원)				
부과코드	관리번호	지방행정제재·부과금		비 고
과목명	납부기한	가산금	계	
채납처분비				
합계				

발 신 명 의 직인

-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거나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하는 등의 경우에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세징수법」 제88조에 따라 공매를 취소 또는 정지합니다.
- 이 통지서는 「지방행정제재·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국세징수법」 제76조제5항의 채권신고 최고, 같은 법 제76조제7항의 배분요구 안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 통지에 갈음합니다.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

검토자 직위(직급)서명

결재권자 직위 (직급)서명
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일자)

접수

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일자)

우 주소

/ 홈페이지 주소

전화()

전송()

/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

/ 공개구분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